

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시행세칙

2017.03.02. 제정

<인권센터>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『고려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』(이하 “규정”이라고 한다) 제5조에 의거하여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사업 및 권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건관련자 보호의 원칙과 권리보장)

-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센터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.
- ③ 제3자인 신고인, 대리인, 참고인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.
- ④ 사건의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.
- ⑤ 사건처리를 위한 제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비밀유지의 의무)

- ①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 관련자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,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② 사건 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,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. 단, 사건 관련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사건 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,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열람을 불허할 수 있다.

제4조(신고 및 접수)

- ① 인권침해 등의 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.
- ② 센터는 신고인,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,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- ③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 인력은 조사팀의 회의 개시 전에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할 수 있다.
- ④ 센터는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및 조사·처리 과정에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관계기관 또는 교내·외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- ⑤ 당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.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·처리 과정에서 센터장은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격리 또는 피해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.

1. 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
2. 수강과목 변경
3. 지도교수 변경

4. 근무부서 변경

5. 그밖에 필요한 조치

- ⑥ 피해자가 조사팀 회부를 원하지 않고 조정을 요청할 경우, 센터는 일차적으로 조정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다.
- ⑦ 센터는 조정을 통해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.

제5조(신고사건의 조사와 처리)

-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.
- ②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는 신고인, 피신고인, 피해자에게 조사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.
- ③ 사건 관련자를 소환할 때는 본인에게 인권침해 당해 사건 관련자임을 명시하고, 전화, 이메일,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보한다.
- ④ 제3항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, 우편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.
- ⑤ 센터장 및 전문 인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⑥ 센터장 및 전문 인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 - ⑦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⑧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신고의 기각)

-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.
 - 1.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
 - 2.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- 3.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신고의 철회)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.

제8조(조정)

- ① 피해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조사팀의 회부 전에 사건해결을 위한 조정을 할 때는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,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조정한다.
- ② 센터장은 전항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피신고인이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.
- 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제3의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④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합의사항 불이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조사팀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9조(조사팀의 조사 및 심의)

- ① 조사팀은 당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,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.
- ② 조사팀 구성 후 심의까지의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.
- ③ 조사팀은 회의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·녹화할 수 있다.

제10조(조사팀원 등의 제척) 팀원, 센터장, 상담사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(이하 “팀원 등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팀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.

- ① 팀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
- ② 팀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- ③ 팀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
제11조(조사팀원 등의 기피)

-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팀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.
 1. 제1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2.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-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2조(조사팀원의 교체) 센터장은 조사팀에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팀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13조(심의위원회의 제척) 위원, 센터장, 상담사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 하는 센터 소속 직원(이하 “위원 등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.

- ①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
- ②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- ③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

제14조(심의위원회의 기피)

-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.
 1. 제1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2.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-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5조(구제조치 등)

-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,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·정책·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,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 하되,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.

제16조(조치)

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.

1.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
2. 피신고인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
3. 피신고인에 대한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
4. 피신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명령
5. 그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

② 센터장은 사건처리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7조(징계)

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부서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.

②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, 징계 또는 기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8조(가중조치 및 가중징계) 피신고인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,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부서에 가중한 징계 또는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① 피신고인이 재범일 경우
- ② 피신고인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인권센터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
- ③ 피신고인이 신고인, 피해자,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
- ④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신고인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, 참고인, 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 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 2차 가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⑤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, 대리인 또는 주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한 경우

제19조(자문수당) 조사팀의 팀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건 처리를 위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(기록 및 자료보존) 센터는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, 조사·처리 과정 등 전 과정을 기록·보존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